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구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중구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 규정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어르신장애인 복지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어르신시설팀), 전화 : 02-3396-5524, 팩스 : 02-3396-8733, 전자우편 : jjy0520@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 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중구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경로당 유지 및 안전관리
4.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지역봉사지도원)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u> <u>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③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u> <u>1. 중구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u> <u>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 지도</u> <u>3. 경로당 유지 및 안전관리</u> <u>4.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u> <u>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u>
<u>제9조 ~ 제12조 (생 략)</u>	<u>제10조 ~ 제13조 (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u>